

촬영허가서							
①신청인	(대표자명)		②촬영명				
③연락처			④촬영내용				
허가내용	⑤ 신청대상 공능	⑥ 대상장소 (전각 등)	⑦ 촬영일자	⑧ 촬영시간	⑨ 촬영인원	⑩ 촬영요금	⑪ 입장료
				~	명(모델 명포함)	원	원
				~	명(모델 명포함)	원	원
	⑫ 촬영장비	카메라장비					
		조명장비					
음향장비							
기타소품							
⑬허가조건	-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,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-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-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- 별표3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- 촬영의 세부사항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,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-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-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·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- 신청자(사업자)는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- 반입 불가 품목 가.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(담배, 라이터,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) 나.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.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·마필 또는 기타 동물 - 건물내부, 박석(薄石: 평평한 돌) 월대(月臺: 넓은 기단 형식의 대)에는 발전차,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-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- 박석(薄石: 평평한 돌) 및 월대(月臺: 넓은 기단 형식의 대)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-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-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-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						
⑭기 타							
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공능유적본부장 (인)							